

‘26. 7.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기 술 보 급 과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6-71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제정이유

-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분석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분석 의뢰, 절차, 거부,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이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시료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분석 수수료 납부,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 분석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여

- 라. 비용추계서 : 여
- 마.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여
- 바.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자. 입법예고 기간 : 2026. 5. 22. ~ 6. 11.(20일간)

4. 따로 붙임

- 가. 조례안
- 나. 비용추계서
-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및 제66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
- 아.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 2026년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계획
 - 타 지자체 조례 (익산시)
- 자. 방침결정문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산하 농산물안전분석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안전분석”이란 작물별 농약성분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대상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예산 확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분석실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잔류농약 분석
2.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김제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 시료의 제출 방법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 통지 등) ① 시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시장은 분석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분석 결과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절차) ① 분석의뢰자는 제7조제1항의 분석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산물안전분석실에 방문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우편, 이메일 등으로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 수수료 납부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김제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김제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김제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김제시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의 3분의 2를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분석자료의 보관)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 습득 등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잔류농약 분석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의 뢰 인	생 산 자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법인소재지)			
	수 거 원	성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소 속)			
의 뢰 내 역	채취장소 (재배필지)		상 세 주 소 (지번)		
	시 료 명 (재배작물·토양)			채취일자	
	의뢰목적		☐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 GAP ☐ 로컬푸드 ☐ 학교급식 ☐ 기타()		
	의뢰항목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우 편 ☐ 이 메 일 : ☐ 팩 스 : ※우편 선택시 1~2주 후 수령		
	수 수 료				
① 분석결과는 의뢰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김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잔류농약 분석결과통지서				
발급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의뢰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법인소재지)			
	채취장소 (재배필지)			
시 료 명			의뢰목적	
의뢰항목			인증구분	
분석 결과	No.	검출성분	검출치(mg/kg)	허용기준(mg/kg)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장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의뢰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발급내용(시료명)				
용도			신청부수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 통지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김제시장 귀하				
				수수료 무료

□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안 제3조(예산 확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

- 1) 추계기간 : 2026. 1월 이후 계속사업
- 2) 지원경비 :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나. 추계 결과

(단위:천원)

편 성 목	통 계 목	2026년*	2026년 이후	증감
합 계		52,980	92,967	39,987
인 건 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4,980	24,967	9,987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	8,000	3,000
	공공운영비	8,000	10,000	2,000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25,000	50,000	25,000

* 2026년 7월부터 실질운영으로 1년 요구예산의 부분 예산 성립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마련

3. 작성자 : 식량작물팀장 김기영

기술보급과장 김영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	-	-	-	-	-
자체 재원		-	-	-	-	-	-
세 출		52,980	92,967	92,967	92,967	92,967	424,84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980	24,967	24,967	24,967	24,967	114,848
사무관리비		5,000	8,000	8,000	8,000	8,000	37,000
공공운영비		8,000	10,000	10,000	10,000	10,000	48,000
시험연구비		25,000	50,000	50,000	50,000	50,000	225,000
재원 조달		52,980	92,967	92,967	92,967	92,967	424,848
의존 재원	소 계	-	-	-	-	-	-
	국비	-	-	-	-	-	-
	도비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시비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보급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27자체개선)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술보급과-4349 (2026.6.2.) 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전북김제027) 1부. 끝.

교육가족과장 영

주무관	아미애	여성가족팀장	최남	교육가족과 과장	2026. 6. 4.
협조자				장	김숙영
시행	교육가족과-19529	(2026. 6. 4.)	접수	기술보급과-4385	(2026. 6. 4.)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6	팩스번호	063-540-4016	/ tnajvn8@korea.kr	/ 비공개(5,7)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전북김제027		
정책명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서명	기술보급과	
	담당자명	안태일	전화번호 063-540-45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6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술보급과)	I. 개 요 ☐ 제정 목적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및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분석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분석 의뢰, 절차, 거부,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마. 이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시료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 분석 수수료 납부,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아. 분석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차.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7. 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 8. 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자체개선안 동의)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를 검토한 결과, 별지 서식 잔류 농약 분석의뢰서에 성별 기재란을 두어 농산물안전분석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4.성별통계 구축과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6월 04일 김제시 복지환경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이미애/063-540-6906) 기술보급과장 귀하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저장 : 안태일 / 기술보급과 (2026-06-12 17:35:49)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결과보고

기술보급과-4333(2026. 6. 2.)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2. 조회기간 : 2026. 6. 2. ~ 6. 11.
3. 조회내용 :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
4. 조회결과 : 의견 없음
5. 금후계획 : 조례 제정 행정절차 이행. 끝.

주무관 안태일 식량작물팀장 대령 2026. 6. 12. 기술보급과장 전경
김기영
협조자
시행 기술보급과-4585 접수
주 5441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59, (교동, 김제시농업기술센터)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4532 팩스번호 063-540-2798 / rapiciani@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문서관리카드기술보급과-4585 1/1

☐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경유)

제 목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보고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5. 22. ~ 6. 11.
3. 예고방법 : 김제시 시보(공고 제2026-665호)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5. 금후계획 : 조례 제정 행정절차 이행. 끝.

주무관 **안태일** 식량작물팀장 **김기영** 대결 2026. 6. 12. 기술보급과장 전결

협조자

시형 기술보급과-4588 접수

우 5441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59. (고동, 김제시농업기술센터) / <http://www.ginje.go.kr>

전화번호 063-540-4532 팩스번호 063-540-2798 / nagiciani@korea.kr / 대한민국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문서관리카드기술폭과-4588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8621(2026.6.26.)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26. 6. 25.(목) 09:2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10명
4. 심의안건 : 총 8건(조례 7,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8건

연번	심의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8건 (조례 7, 규칙 1)				
1	2026-29	행정지원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축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30	세 정 과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31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2026-32	교육가족과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2026-33	스마트유통과	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6	2026-34	기술보급과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7	2026-35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8	2026-36	수도사업소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교육가족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스마트유통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보급과장), 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현

의회법무팀장 이예라

기획감사실장 전결 2026. 6. 29.
이영호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8673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영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kirus@korea.kr

/ 부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시행 2012. 1. 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2012. 1. 10., 일부개정]

-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1. 10.]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시행 2021. 10. 25.]

[농촌진흥청고시 제2021-26호, 2021. 10. 25., 일부개정.]

1. 시험의뢰의 기간 및 의뢰시험의 수행방법

- 시험의뢰의 기간 : 시험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의뢰시험의 수행방법

가. 의뢰된 시험은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의 업무절차에 의한다.

나. 의뢰된 시험 중 유사한 품목이 의뢰된 경우 시험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포장에서 동시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의뢰된 시험은 설계심의 후 작물재배시기에 맞추어 시험을 수행한다.

2.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문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1. 비료의 성분 및 물리성분석< '07.11.30. '13.6.1 개정>			
•주성분(질소, 인산, 가리, 고토, 망간, 아연, 동, 붕소, 철, 규산, 몰리브덴, 알칼리온, 유기물, CEC, 칼슘, 초기용출율)	1점 1성분	14,300	
•유해성분(황청산화물, 설파민산, 아질산, 카드뮴, 비소, 납, 수은, 크롬, 염산불용해물, 니켈, 구리, 티탄, 아연, 염분, 염소, 뷰렛태질소, 아황산)	1점 1성분	16,000	
•기타성분			
- 유기물/질소의비	1점	28,600	별 도 의 성분 의뢰가 있을 경우 추가성분만 부담
- 구연산칼슘	1점	76,000	
- DMPP	1점	76,000	
-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점	33,000	
- 수용성질소	1점	33,000	
- 질소활성계수	1점	33,000	
- 수용성세륨	1점	30,600	
•수분	1점	7,500	
•물리성			
- 분말도	1점	9,600	
- 통과도	1점	25,400	
•무숙도			
- 종백법	1점	43,800	
- 솔비타	1점	81,400	
- 종자발아법	1점	91,100	
•무산물비료의 미생물상(세균, 방선균, 효모사상균)	1점 1성분	34,200	

2. 비료포장대(품질) 검사< '07.11.30 삭제>			
3. 농약(원제) 이화학분석< '13.6.1 개정>			
*주성분(부성분, 유해성분 포함)	1성분	102,600	
*물리성(분말도, 수용성, 수화성 등)	1항목	10,800	
*정량분석	1점	120,000	
*정성분석	1점	137,600	
*유해성분 (DDT,HCB,ETU,Hydrazine,NPOA,PCE)	1점 1성분	141,200	
*친환경유기농자재(아자디락틴,마트린)	1점 1성분	250,700	
4. 농약잔류량분석(작물, 토양, 수질별로 분석)	1약종 (동일성분 1시료추가시)	174,000 (34,900)	
5. 오염분석< '13.6.1 개정>			
*작물(S, F, Cl, 중금속)	1점 1성분	11,700	
*수질(N, COD, SO ₄ , Na, Cl)	1점 1성분	8,500	
- NH ₃ -N	1점	22,400	
- 클로로필-a	1점	20,000	

문 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 탁도(Turbidity)	1점	7,300	
- 시안(CN)	1점	16,400	
- 페놀(Phenol)	1점	19,000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1점	21,200	
- 플루오르(F)	1점	26,200	
- 아질산성 질소(NO ₂ -N)	1점	11,600	
- 6가크롬(Cr+6)	1점	12,900	
- 노말헥산(n-hexane)	1점	21,100	
- M-알칼리도	1점	7,500	
- P-알칼리도	1점	7,500	
- 용해성 중발잔류물(TDS)	1점	8,000	
*토양(As, Ca, Pb, Cd)	1점 1성분	11,700	
6. 토양물리화학적성분< '13.6.1 개정>			
*일반물리성			
- 토 성	1점 1성분	13,500	
- 보수력	1점 1성분	14,900	
*X-선 회절분석	1점	19,800	
*시차열분석	1점	37,700	
*토양조사	50ha	104,600	
*토양화학성분(N, P ₂ O ₅ , K ₂ O, CaO, MgO, pH)	1점 1성분	9,900	
- 유기물	1점	21,600	
- 유효규산	1점	30,200	
- 석회소요량	1점	17,000	
- 양이온 치환용량	1점	30,400	
- 암모늄태 질소	1점	20,500	
- 질산태 질소	1점	22,900	
7. 식물체분석< '13.6.1 개정>			
*무기성분(N, P ₂ O ₅ , SiO ₂ , K ₂ O, 기타)	1점 1성분	10,500	
*유기성분(당, 전분)	1점 1성분	9,200	
*엽록소	1점 1성분	6,300	
*실내발아성분석	1점	58,700	

8. 사료분석<'01.9.19, '05.12.29, '13.6.1 개정>			
◦일반 조성분			
- 수분	1점	2,600	
- 조단백질	1점	8,200	
- 조지방	1점	11,500	
- 조성유	1점	14,200	
- 조회분	1점	3,400	
- 요소	1점	10,000	
- 칼로리	1점	13,500	
◦무기물 I			
- Ca, Cr, Cu, Fe, K, Mg, Mn, Na, P, Zn, 토사 ('05.12.29개정)	1점 1성분	11,500	
- 염분	1점	8,100	
◦무기물 II			
- Cd, Pb, F, Hg, As, S, Se('03.10.23, '05.12.29개정)	1점 1성분	12,800	
문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멜라민	1점	58,600	
◦유기산(초산 등)	1점	49,100	
◦베타 글루칸	1점	70,000	
◦동물성단백질 혼입여부('03.10.23신설)			
- 현미경 검사방법	기본 6점 (1점추가시)	54,000 (13,500)	
- 효소결합 면역분석법	기본 6점 (1점추가시)	302,000 (45,000)	
-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기본 6점 (1점추가시)	437,400 (70,200)	
◦동물성유지내 불용성 불순물 검사('03.10.23신설)	1점	15,800	
◦동물성유래 인산칼슘 검사('03.10.23신설)	1점	10,500	
◦아미노산			
- Stable(Lys 등)	1점	99,100	
- 황 함유계열(Met 등)	1점	99,100	
- 유리아미노산	1점	278,000	
◦비타민	1점 1성분	45,300	
◦렙신 소화율(PD)	1점	27,800	
◦세포막 구성물질			
- NDF	1점	21,600	
- ADF	1점	21,600	
- 리그닌	1점	27,000	
- 셀룰로스	1점	21,600	
- 실리카	1점	21,600	
◦휘발성 지방산	1점	45,300	
◦지방 특수분석(산가)	1점 1성분	10,100	
◦휘발성 열기태 질소(VBN)	1점 1성분	10,100	
9. 축산물 분석<'13.6.1 개정>			
◦일반 조성분			
- 수분	1점	2,600	
- 단백질	1점	8,200	
- 지방	1점	11,500	
- 회분	1점	3,400	
◦무기물 I			
- Ca, Cr, Cu, Fe, K, Mg, Mn, Na, P, Zn	1점 1성분	16,200	
◦무기물 II			
- Cd, Pb, F, Hg, As, Al ₂ O ₃ , S	1점 1성분	35,400	
◦아미노산			
- Stable(Lys 등)	1점 1성분	99,100	
- 황 함유계열(Met 등)		99,100	

◦지방산 ◦지방 특수분석(TBA) ◦축산물 이화학적 분석 - 적정산도 - 전단력, 가열감량 - 보수력 - 관능검사 - pH, 육색, 비중, 굴절률, 난황색, 난각두께 - 하우유니트, 난황계수, 난백계수	1점 1점 1성분 1점 1성분	176,300 10,100 5,200 7,400 7,600 16,600 3,400 5,200	
문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회발성 염기태 질소(VBN)	1점 1성분	10,100	
◦소 도체조사(도축세 제외)	1두	118,400	도축세 제외
◦돼지 도체조사(도축세 제외)	1두	45,100	도축세 제외
10. 유·육류제품 가공제품			
◦유제품 - 시유(원유 100ℓ 기준) - 버터(30ℓ 기준) - 아이스크림(크림 50ℓ 기준) - 치즈(원유 150ℓ 기준) - 분유(농축유 20ℓ 기준) - 균질(100ℓ 기준) - 크림분리(100ℓ 기준)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19,700 57,400 96,600 125,500 79,600 21,800 21,100	
◦육제품(햄, 소시지) (원재료 25kg기준)	1점	213,600	
11. 사료·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13.6.1 개정>			
◦잔류농약검사(유기인계, 유기염소계)	1점 1계열	234,900	
◦항생, 항균물질(정성분석) - 베타락탐계, 마크로라이드계, 설폰아미이드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테트라사이클린계	1점 1계열	84,100	
◦항생, 항균물질(정량분석) -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 설파퀴복사린, 설파치아졸, 오라퀸독스 등	1점 1성분	118,700	
◦일반미생물 - 대장균군, 유산균수 - 일반세균 - 진균수	1점 1점 1점	12,000 10,000 12,000	
◦유해 미생물< '13.6.1 개정> - <i>Escherichia coli</i> 0157 : H7 - <i>Salmonella</i> spp.(정성) - <i>Salmonella</i> spp.(정량) - <i>Staphylococcus aureus</i>(정성) - <i>Staphylococcus aureus</i>(정량) - <i>Bacillus cereus</i>(정성) - <i>Bacillus cereus</i>(정량) - <i>Listeria monocytogenes</i>(정성) - <i>Listeria monocytogenes</i>(정량)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41,690 40,500 69,610 43,630 92,070 44,200 95,970 53,820 87,360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B2, G1, G2, 오클라톡신A) <'05.12.29 개정>	1점 1성분	94,500	

문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 미생물 동정< '13.02.00 개정> - 지방산분석(호기성세균) - 지방산분석(혐기성세균) 16S rDNA sequence - 생균제< '13.02.00 개정> <i>Enterococcus faecium</i> <i>Closteridium butyricum</i> <i>Bacillus coagulans</i> <i>Bacillus subtilis</i> <i>Bacillus cereus</i> <i>Bifidobacterium thermophilum</i> <i>Bifidobacterium pseudolongum</i> <i>Lactobacillus acidophilus</i> <i>Lactobacillus salivarius</i> <i>Lactobacillus plantarum</i> - Yeast <i>Lactobacillus reuteri</i> <i>Pediococcus acidilactici</i> <i>Aspergillus niger</i> <i>Aspergillus oryzae</i>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1점	93,100 132,150 184,770 127,870 124,470 116,320 112,480 107,180 119,410 119,410 117,210 117,210 147,130 115,150 153,740 117,780 63,890 63,890	
- 첨가제 - 산화방지제 - 보존제검사 - 착색료(타르색소)검사 - 발색제(아질산염)검사	1점 1점 1점 1점	55,000 33,000 13,000 26,500	
12. 유전자분석< '13.6.1 개정>			
문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 PCR-RFLP (1점 추가시) - 친자감별 (1점 추가시) - 성 판별 (1점 추가시) - 개체식별 (1점 추가시) - 종 판별 (1점 추가시) - 품종식별 (1점 추가시) - 돼지PSS (1점 추가시) - 한우확인시험 - 쌀 품종판별	기본 10점 (1점 추가시) 1점 24립	171,800 (15,000) 480,400 (40,000) 219,800 (20,000) 480,400 (30,000) 315,400 (25,000) 242,800 (20,000) 170,000 (15,000) 100,000 201,300	분석가축 은 소,돼지에 한하며, 품 종식별은 개발된 기술에 한함
분자표지 이용 육종재료 분석< '07.11.30 신규> (동일시료 표지 1점 추가시)	시료 당 1표지	6,700 (2,900)	

13. 농산식품분석< '07.11.30. '13.6.1 개정>			
◦일반성분			
-수분	1점	2,600	
-조단백질	1점	8,200	
-조지방	1점	11,500	
-조섬유	1점	14,200	
-조회분	1점	3,400	
◦무기성분(Ca, P, K, Na, Fe, Mg)	1점 1성분	11,500	
◦비타민			
-A	1점	76,900	
-B ₁ & B ₂	1점	71,800	
-C	1점	61,800	
-나이아신	1점	43,900	
◦식이성유	1점	60,000	
◦폴레스테롤	1점	50,000	
◦캡사이신(전처리 제외)	1점	10,000	
◦축산물지방산(전처리 제외)	1점	47,000	
◦안토시아닌	1점	25,000	
◦글로로필-a, b	1점	25,000	
◦베타카로틴	1점	25,000	
◦로알렐리	1점	60,000	
◦프로폴리스	1점	88,000	
◦봉독	1점	100,000	
◦당류(글루코즈, 프럭토즈, 스크로즈, 말토오즈, 락토오즈)	5점	70,000	
	(개별회시)	(20,000)	
분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14. 누에고치 기계검정	1점	43,000	
<삭제 ' 16.7.28.>			
16. 전자현미경	1점	24,000	
17. 기타성분분석 (1~15항에서 누락된 분석항목)	1점 1성분	유사항목의 분석수수료 또는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에 의함	

※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

3. 시험의뢰 수수료

의뢰명	산출기준	수수료(원)	기타
◦시험등 신청	1항목	면제	
◦시험등 성적서재발급	1통	면제	

4. 시험경비

[별표]의 시험경비 산출기준표에 의하여 시험규모에 따라 산출된 액수

5.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개정 2020. 12. 10.>

부칙 <제2021-26호, 2021. 10.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38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9.20>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2]

[법률 제11705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비료·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제목개정 2016.12.2.]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시군명	조례제정		조례명	제정일
	여	부		
전주시	○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20.06.12.
군산시		○		
익산시	○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22.12.30.
김제시		○		
정읍시		○		
남원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23.12.13.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23.12.15.
고창군	○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21.08.17.
부안군	○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24.10.02.

□ 참고자료 : 2026년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계획

2026년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계획

□ 운영목적

- 안전농산물 출하 검증 시스템 구축으로 김제시 농산물 소비자 인식제고
-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푸드플랜 추진
-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 대응 농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2026년(2년)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 500, 시 500) *자체운영비 53백만원
※ 2026년 : 500백만원(국 250, 시 250)
- 위 치 : 김제시 홍사동 558-6(김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 사업내용 : 잔류농약 분석관련 장비 일체
 - (2025) LC-MSMS, 실험대, 흡후드 구입
 - (2026) GC-MSMS, 볼텍스믹서, 전자저울 외 8종 구입

□ 그간 추진상황

- 근무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타시군 실습 '26. 1.
- 분석장비(LC-MSMS, 실험대, 흡후드) 입찰 '26. 4.
- 2단계 입찰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26. 4.
- 분석장비(GC-MSMS, 볼텍스믹서, 전자저울 외 8종) 납품 --- '26. 6.

□ 금후계획

-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시작 '26. 7.

□ 분석계획

- 로컬푸드인증 농산물 안전성 검사 : 200점
-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검사 : 20점
- 친환경 농산물 마크 인증용 안전성검사 : 120점
-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대응 농산물 안전성검사 : 160점

□ 분석절차

- 시료접수 : 의뢰자 주소, 재배지확인, 시료량 확인
- 시료전처리 및 기기분석 : 잔류농약 463종 분석
(살균제 125종, 살충제 198종, 제초제 127종, 생장조절제 11종, 기타 2종)
- 결과판독 : 적합시 결과통보, 부적합시 재분석 출하가능일 조절
- 결과통보 : 20일 이내 통보: 공문, 전화, 문자, 팩스 등

※시료 필요량

곡류·두류·채소	과실류	엽채류	인삼류	농지·자재·용수
1 ~ 3kg	3 ~ 5kg	50개체 이상 or 500g중 무게 많은것	6개체 이상 or 500g중 무게 많은것	2 ~ 5kg(L)

□ 업무흐름도

주 관	스마트유통과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절 차	출하농가 모집	공급가격 결정	공급품목 계약	안전성 검사	주문	납품
	공개모집	가격조정 심의위원회	센터↔ 출하농가	농산물 안전분석실	발주처 →센터	농가→센터 →기관

※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체 업무흐름도 (참고1)

□ 기대효과

- 푸드플랜, 로컬푸드 확산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과학영농기반 구축으로 컨설팅 강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
- 안전 먹거리 생산기술 지원으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농업인 등 신뢰 확보

□ 실험실 평면도



[별첨]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체 업무흐름도

① 공급업체(농가) 모집

- 모집분야 : 농축산물 분야(출하농가회는 약정체결하되, 그 외 품목에 대한 공개모집 선정) 및 가공품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품목
 - (농·축산물)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 (가공품) 도내산 원재료로 만든 장류, 두부류, 기름류, 절임류, 고춧가루(김치류 포함), 유제품류 등 가공품
- 자격기준(안) ※단순 유통·위탁업체는 제외
 - 김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직접 식품을 생산, 제조하고 있는 업체
 - 원료수급 대장 등을 구비하여 주재료 원료의 100% 전북특자도산 농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체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제품(예: HACCP, GAP, 친환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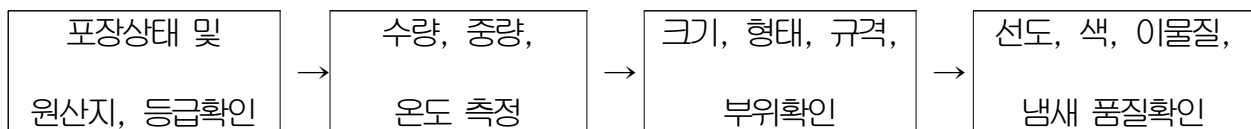
② 공급계약 체결

- 계약기간 : 2025. 7. ~ 2027. 6
- 체결주체 : 먹거리통합지원센터↔공급자(농가, 업체)
- 계약주기 : 2년 주기
- 계약방법
 - (출하농가) 공급약정체결(포기, 해지 외에 자동연장)
 - (그외업체) 계약체결(공개모집→평가→선정)
- 공급가격 결정
 - 농가(업체)제안가 + 시장조사가→가격조정심의위원회 단가 결정
 - 가공식품 : 입찰가격(최저가 낙찰)

③ 수 · 발주 체계

- 수발주 방식 : 전산시스템을 통한 수발주
- 명 칭 :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운영절차 : 발주 - 수주(납품) - 대금지급(발주처→센터→농가·업체)
 - 1) (센터) 공급단가 및 품목 시스템 등록
 - 2) (수요처) 필요품목 발주(또는 입찰계약)
 - 3) (농가·업체→센터) 발주품목 납품
 - 4) (센터→수요처) 발주품목 납품
 - 5) (수요처→센터) 대금 지급
 - 6) (센터→농가·업체) 공급금액 지급

④ 물품 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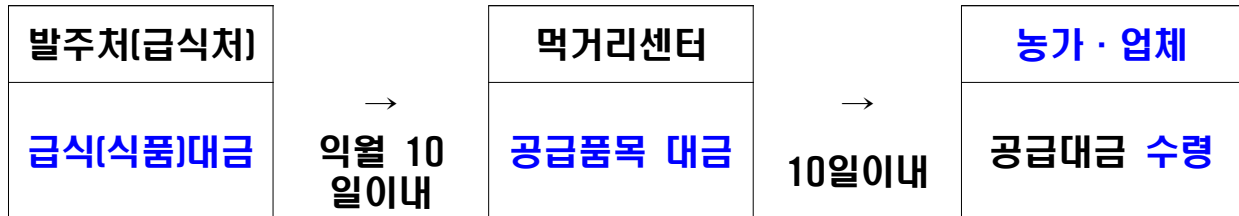
⑤ 식재료 안전성검사

- 검사대상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급 전 품목
- 검사기관 : 센터(안전분석실)
- 검사주기 : 분기 또는 수시
- 검사항목

품목군	검사주기	검사항목
농산물	수시	잔류농약 등
수·축산물	분기	기준규격 등
가공식품	분기	품목별 기준규격 검사

6 대금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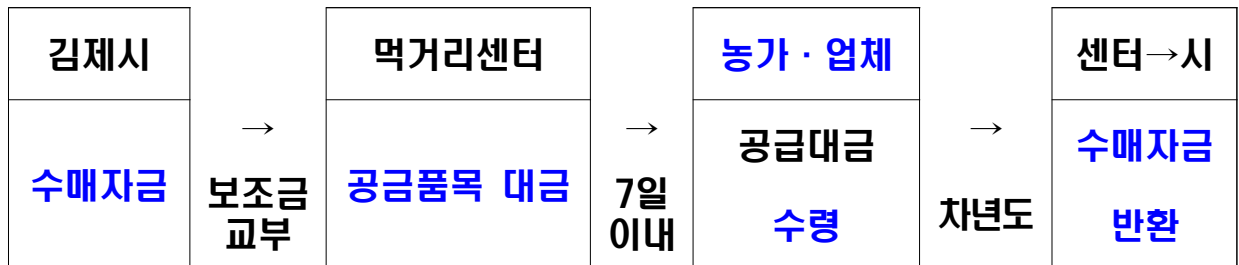
○ (일반납품) 업체 대금 수령 이후 농가·업체 지급(후불제)



※ 수수료 : 10 ~ 13% 정도 예상(이사회 승인·결정)

※ 완주 10%, 군산 10%, 익산 13%, 전주 5~20%

○ (수매) 대량 납품시 농가·업체 지급(즉시 지급)



- 수매자금 보조금 지급시, 2026년까지 사용 후 보조금 반환(군산시 사례)

- 이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림수산물 발전기금(융자이율:2.5%)

활용하여 자금 확보

※ 자격조건 : 법인, 1년 이상 농산물 수매 활동 등 사업 실적 증빙 필요

□ 참고자료 : 타 지자체 조례 (익산시)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정) 2022.12.30 조례 제23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실의 설치·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분석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試料)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료는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를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4조(처리기한) ①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 농약 분석결과 통지서를 의뢰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분량이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자료,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제6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6조(분석 수수료)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참여 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토양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은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37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석 수수료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수 수 료
1. 토양화학성분 (N, P2O5, K2O, CaO, MgO, pH, 유기물,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양이온 치환용량)	1점	158,600
2. 잔류농약분석	1점	174,000

※ 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준한다.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제4조 관련)



601.001.001.001

() 비료사용 처방서

경지 현황

조사번호		작물명		면적	
경작자명		경작지			
경작자주소					
토양유형		토성		토양통	배수등급
토양특성					

토양검정 결과

많음

적정

적음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단위	pH(1:5)	g/kg	mg/kg	cmol+/kg	cmol+/kg	cmol+/kg	dS/m
적정범위	6.0~6.5	20~30	250~350	0.55~0.65	5.0~6.0	1.5~2.0	2 이하

비료 추천량 (kg / 300 m²)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구분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퇴비 종류				소석회 (석회고토)
	요소	유아	용성인비	용과린	염화칼리	황산칼리	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혼합퇴비	
밀거름											
웃거름											

< 참고 > 10a당 화학비료 성분량(밀거름/웃거름):

담당자 의견

➤

발급기관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발급일자:

담당자:

전화:

[별지 제4호서식]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 (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의뢰인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소재지)			
	전화번호			
생산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산지 (재배필지)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				
분석결과	검출성분	검출농도 (mg/kg)	허용기준 (mg/kg)	비고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상하는 김제

